

1. 개정이유

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267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12. 31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, 전공의의 진료참여 고지, 전공의 모집·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,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,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체계 구축,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며,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, 대기실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,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- 라.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, 조사방법 등을 규정함(안 제14조).
- 마. 신설조항 반영에 따라 조문 번호를 조정하고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

조문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,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, 제5조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제8조,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,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.

제2조, 제3조 제7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등)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,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정기적 실시
2. 전공의가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

차

3.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·조정신청 지원 등
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제3조(전공의 진료참여 등의 고지)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등) ①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1. 모집 및 선발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할 것

2. 성별, 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

3.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

한다.

③ 그 밖에 전공의 모집 및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4조(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과 내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에 따른 전공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의 수련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
2.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4조(종전의 제2조)제1항 중 “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4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9조제1항제9호”를 “법 제9조제1항제10호”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9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4조제1항”을 “법 제14조제1항제5호”로 한다.

제15조(종전의 제11조) 제1항제1호 중 “조치”를 “등 조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수련병원등”을 “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”으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2조) 중 “제5조 및 제6조”를 “제10조 및 제1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등)</u> <u>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,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정기적 실시</u> <u>2. 전공의가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절차</u> <u>3.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·조정신청 지원 등</u> <u>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(전공의 진료참여 등의 고지)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4</u>

제2조(수련시간) ①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본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”이란 4주의 기간(휴가·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)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말한다.

② (생략)

제3조 ~ 제3조의3 (생략)

제4조(수련규칙) ①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11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조의2에 따른 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련시간) ① 법 제7조제1항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 ~ 제5조의3 (현행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와 같음)

제6조(수련규칙) ① 법 제9조제1항제10호-----

---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등) ①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1. 모집 및 선발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할 것

2. 성별, 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아니할 것

3.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

제5조 ~ 제8조 (생략)

제9조(수련환경평가)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”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제10조 (생략)

<신설>

한다.

③ 그 밖에 전공의 모집 및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8조 ~ 제11조 (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

제12조(수련환경평가)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4조(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과 내용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에 따른 전공의 종 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의 수련 및 교육 운영에

	<u>관한 사항</u> <u>2. 전공의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수련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, 서면조사, 전화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 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
<u>제11조(시정명령) ①</u>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<u>제15조(시정명령) ①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 전공의에 대한 휴가 <u>조치</u>를 위반한 경우 2. ~ 4. (생 략) 5. 법 제13조에 따른 <u>수련병원</u> <u>등의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</u> 6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<u>제12조</u>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 부장관은 <u>제7조 및 제8조</u>에 따 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 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1. ----- ----- <u>등 조치</u>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<u>수련병원</u> <u>등 및 수련전문과목</u>-----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6조</u>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<u>제10조 및 제11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35